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27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3. 24.

판결 선고 2021.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1.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5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에 대한 원고의 채권

- 1) D이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5차전574호로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2) 위 법원은 2015. 10. 23. "D은 원고에게 10,015,682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8.8%, 5,074,4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2,146,089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각 비율에 의한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2016. 1. 14. 확정되었다.

나. 망 E의 사망과 상속

- 1) D의 모친인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9. 11. 5. 사망하였다.
- 2) 망 E의 법정상속인으로는 피고 및 F과 D이 있으나, 2019. 1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58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인 1/3지분은 D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포기하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에게 모두이전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D의 법정상속분 상당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의 채무에 대하여 몰랐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처가 망 E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처 소유인데, 망E이 사망하자 피고의 처가 상속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며, 망 E도 다른 형제들에게 욕심내지 말고 상속을 포기하라고 유언하였기에 D도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또 피고 부부가 망 E이 사망하기까지 9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가며 간병하고 생활비,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데다가 D이 덤프사업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피고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주기도 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피고의 처라거나 유언이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망 E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도록 유언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2) 기여분 주장

피고의 주장에 기여분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살펴본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인 망 E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또 피고의 주장에 선의라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해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등 참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별 지 목 록

1. 1동의건물의표시

강원도 동해시 []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동해시 []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49.62 m²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강원도 동해시 [] 대 17365.5m²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7365.5분의 39.0236

———— 이 상 ————

관할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